

외롭지 않을 권리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법

황두영

강사 소개

황두영 (fangdeh@gmail.com)

- 정치학 석사
- 前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국회의원 보좌관
- 저서: [외롭지 않을 권리], [후보단일화 게임]
- MBC라디오 <시선집중> '여기도잇슈' 진행

왜 <외롭지 않을 권리> 인가?

외로움
=사적인 감정?

권리
=공적 개념?

객관적 조건으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이 고독한 상태가 되면,
사회적 문제이자 정책적 과제(10쪽)
국민이 외로워져야 굴러가는 사회 (67쪽)

<생활동반자법 발의>
2023.4.27. 용혜인 안 발의
2023.5.31. 장혜영 안 발의



‘생활동반자 관계’란?

- (1) 혈연이나 혼인으로 이뤄진 민법 상 가족이 아닌
- (2) 두 성인이
- (3) 합의하에
- (4) 함께 살며 서로 돌보자고 약속한 관계

‘생활동반자법’이란?

생활동반자 관계를

(1) 국가에 등록하면

(2)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복지혜택과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3) 헤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법

‘생활동반자법’ 과 ‘결혼’의 차이

- (1) 둘의 성별이나 같이 사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 (2) 영원한 관계를 전제하지 않으며
- (3) 일방이 원해도 해소가 가능하다(재산분할, 손해배상은 해야)

☞ 결혼 제도에서 ‘함께 살며 서로 돌보기’의 의무만을 가져온 것

1. 달라지는 가족 인식

[종합] 김구라, 여자친구 동거 고백 “결혼식 없이 식구들끼리 식사”



방송인 김구라가 여자친구와 동거 중이라고 말했다.

20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서 김구라는 “많은 분들이 숨기는 거냐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며 최근 동거 중인 여자친구에 대해 밝혔다.

김구라는 “예전에 여러 일도 있었고 아들도 20대다. 젊은 분들하고 내 나이대의 동거는 느낌이 다르다. 결혼식 없이 식구들끼리 식사를 했다. 쑥스러운 것도 있고, 그쪽도 조용하길 원했다”라고 말했다.



#SBS 국민정원

SBS

경기도 연천군



여자
×
들이
×
살고
×
있습
×
니다



김하나 × 황진우

위즈덤하우스

혼자도 결혼도 아닌, 조립식 가족의 탄생

2019. 12. 02
원형 씨와 룸메이트 석원 씨가
00동에 이사를 왔나

씨리얼 1688-2490

"소수자는 틀린 것 아니다"...동성커플 건강보험 자격 첫 인정(종합2보)

2심 재판부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1심 판결 뒤집어
"차별·혐오 아닌 사랑이 이겼다"...건보공단 "상고할 것"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구진욱 기자, 강승지 기자 | 2023-02-21 14:54 송고 | 2023-02-21 17:58

댓글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요구해온 소성욱씨와 김용민씨. 2022.1.7/뉴스1 © News1

동성커플에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법원 판단이 나왔다. 커플은 선고 직후 "차별과 혐오가 아닌 사랑이었다."

'임신 동성부부' 축복의 만삭 파티...“네 작은 발, 세상에 큰 자국”

등록 :2023-07-24 05:00 수정 :2023-07-24 22:53

금

김규진·김세연씨 베이비샤워...하객 70명 모여 축복
“보내주신 악플은 교육비와 돌잔치 비용으로 쓸게요”



동성부부로서 처음으로 임신 사실을 공개한 김규진(오른쪽)·김세연씨 부부가 22일 낮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연 베이비샤워에서 하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당사자 제공, 커넥트유 이선유 촬영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혼인·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생계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



법적인 혼인·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 할 수 있다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



법과 제도가,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자료: 여성가족부, 단위: %, 2021년 5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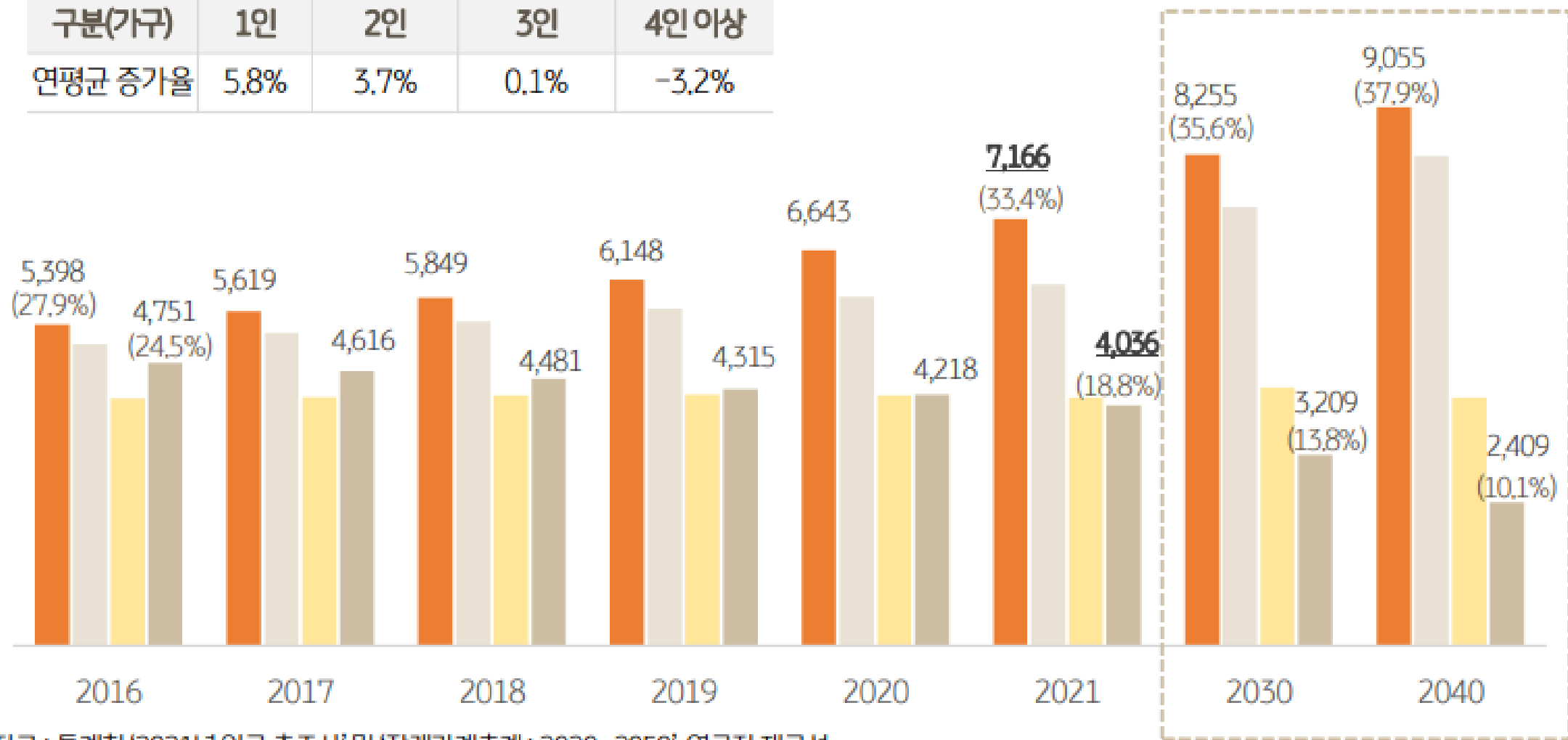
2. 생활동반자법의 필요성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 이상가구 [단위: 천가구]

(괄호 안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 가구원수별 가구수 연평균 증가율 (2016년~2021년)

구분(가구)	1인	2인	3인	4인 이상
연평균 증가율	5.8%	3.7%	0.1%	-3.2%



자료 : 통계청 '2021년 인구 총조사' 및 '장래가계추계: 2020~2050', 연구자 재구성

행정안전부,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

4-1-3-3 연령별 1인세대 A single-person household by age

(2022. 12. 31. 기준)(As of December 31, 2022)

(단위 : 세대)(Unit : Househ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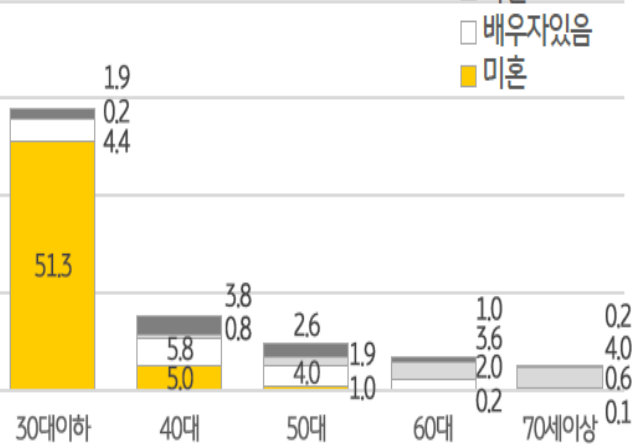
연도 Year	구분 Classification	계 Total	10대 이하 10s and Younger	20대 20s	30대 30s	40대 40s	50대 50s	60대 60s	70대 이상 70s and Older
2018		8,085,526	35,973	1,082,205	1,332,773	1,278,751	1,535,742	1,297,279	1,522,803
2019		8,488,621	39,006	1,201,398	1,376,075	1,279,869	1,566,807	1,407,850	1,617,616
2020		9,063,362	35,521	1,364,686	1,468,243	1,303,968	1,606,861	1,561,689	1,722,394
2021		9,461,695	35,985	1,481,811	1,574,251	1,303,807	1,620,825	1,685,226	1,759,790
2022		9,724,256	41,580	1,521,514	1,634,274	1,297,192	1,616,451	1,758,095	1,855,150

* 주민과 주무관 객한솔 (044-205-3158)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홈페이지(jumin.mois.go.kr),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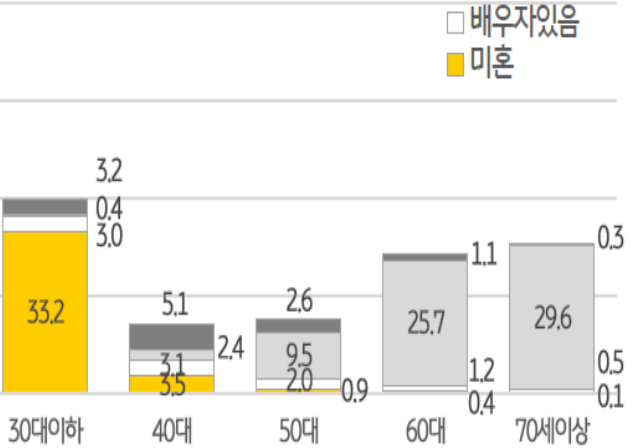
그림03 1인가구의 혼인상태 변화 (2000~2015년)

(단위: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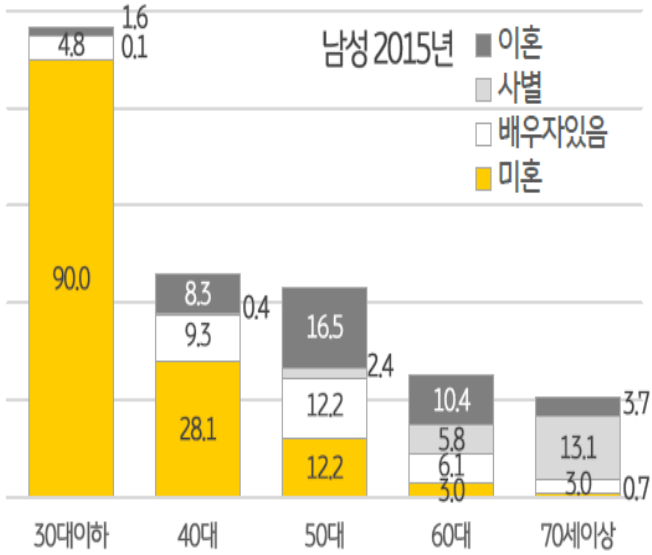
남성 1인가구 혼인상태별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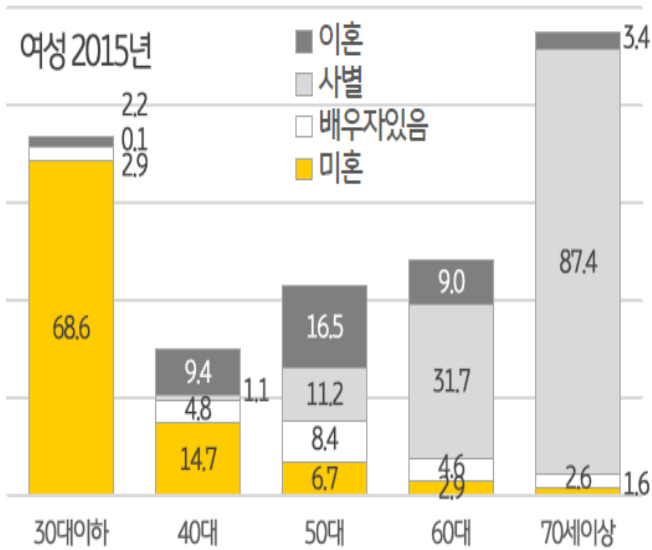
여성 1인가구 혼인상태별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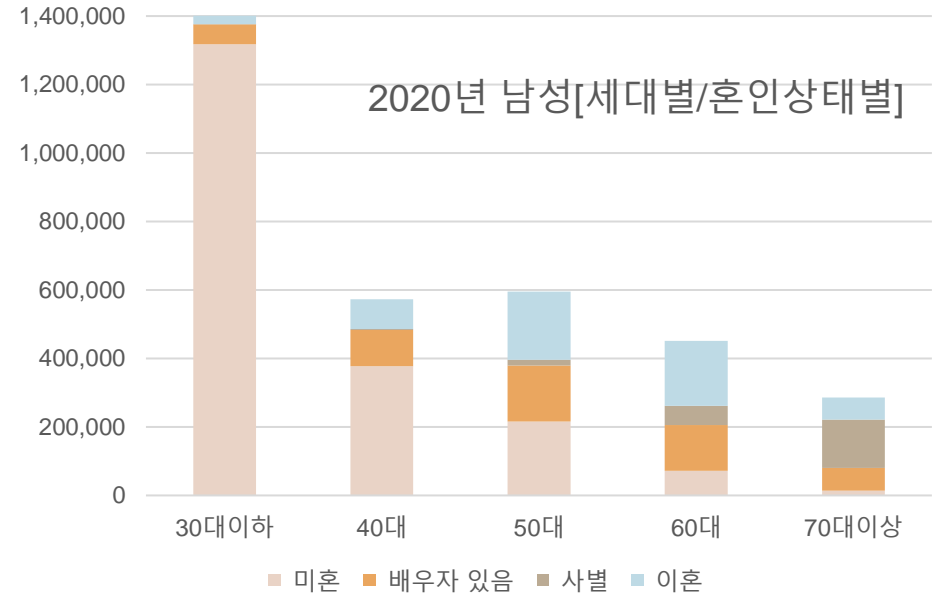
남성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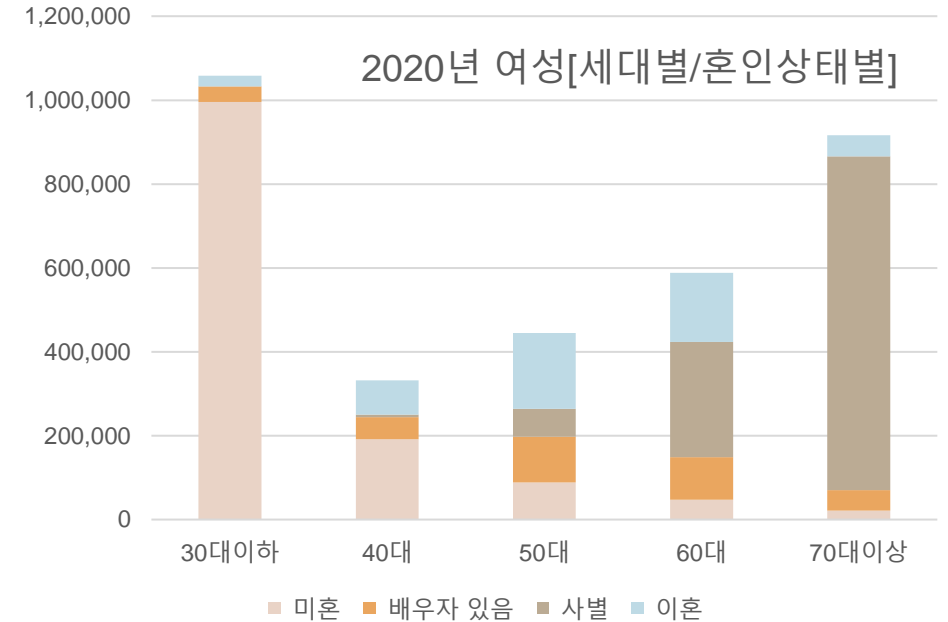
여성 2015년



2020년 남성[세대별/혼인상태별]



2020년 여성[세대별/혼인상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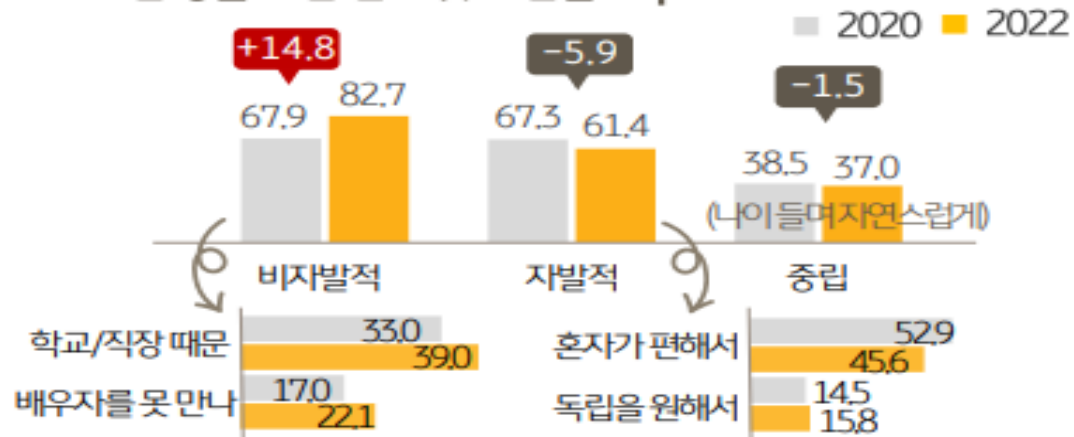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표본조사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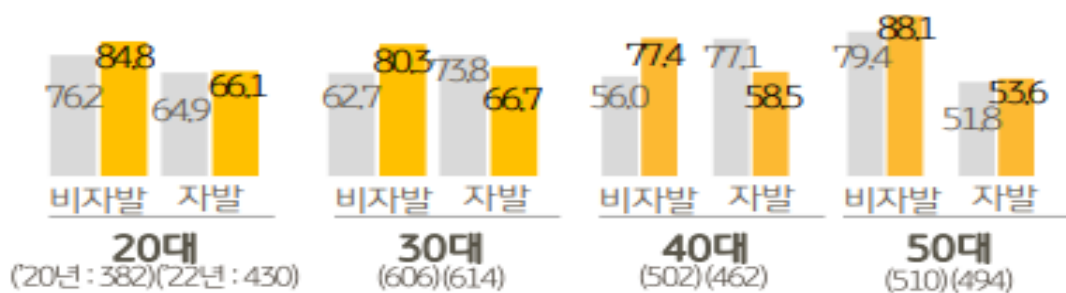
KB경영연구소, <2022 한국 1인가구 보고서>

그림 II-1 1인 생활 동기 [n=2,000, 단위: 1+2순위%, %p]

● 1인 생활 요인 변화 및 요인별 Top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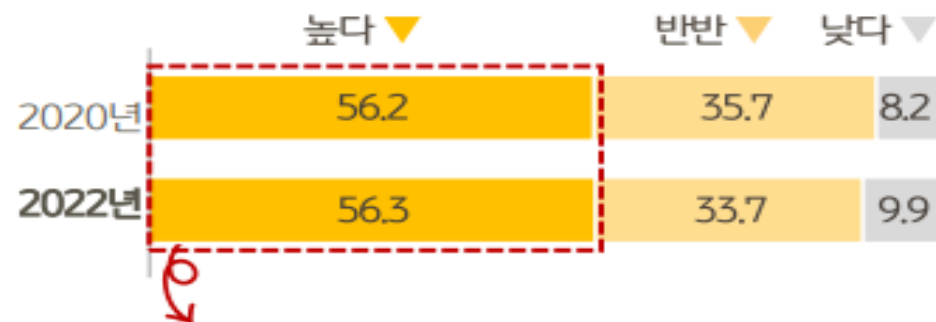


● 연령별 1인 생활 요인 변화 및 요인별 Top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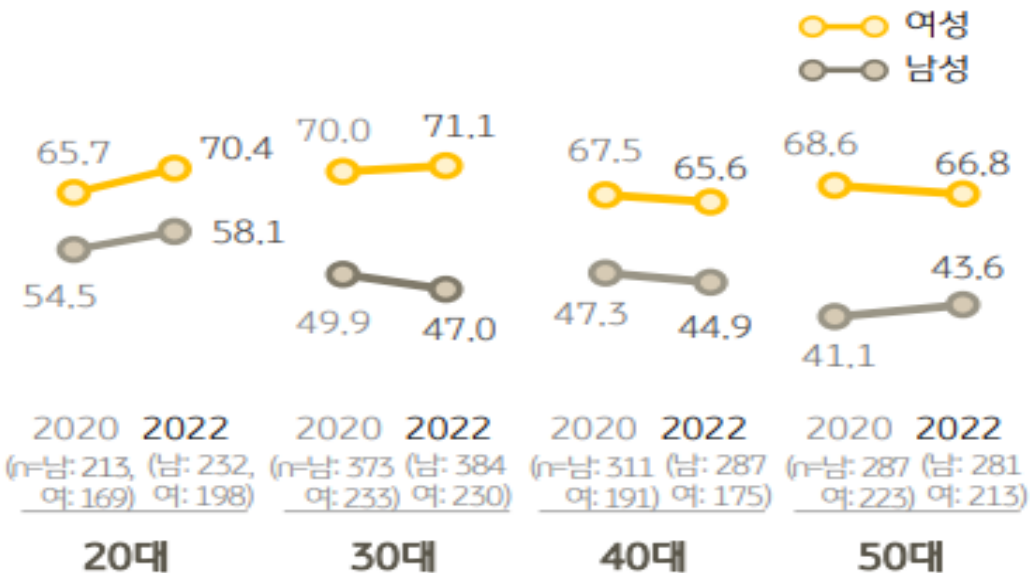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비자발	학교/직장 때문에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못 만나	
자발	혼자가 편해서			

그림 II-2 1인 생활 지속 의향 [n=2,000, 단위: 1+2순위%]



● 연령 및 성별 1인 생활 지속 의향 비율 변화 (의향이 높은 응답자 限)



2020 (n=남: 213, 여: 169) 2022 (n=남: 232, 여: 198) 2020 (n=남: 373, 여: 233) 2022 (n=남: 384, 여: 230) 2020 (n=남: 311, 여: 191) 2022 (n=남: 287, 여: 175) 2020 (n=남: 287, 여: 223) 2022 (n=남: 281, 여: 213)

전국 비친족 가구 추이

친족이 아닌 친구·애인 등 남남으로 구성된 5인 이하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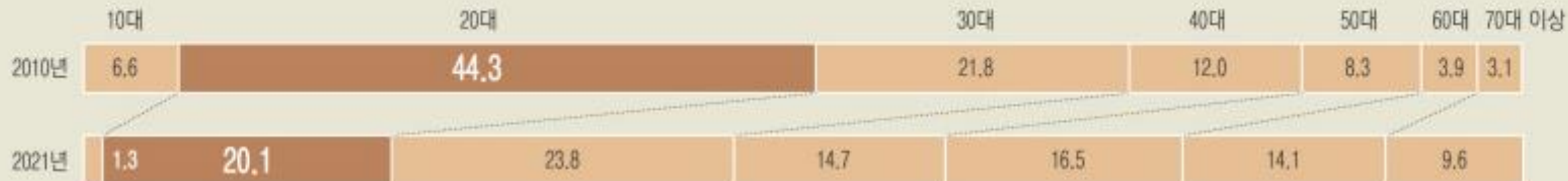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박영석 기자. 안예지 인턴 20220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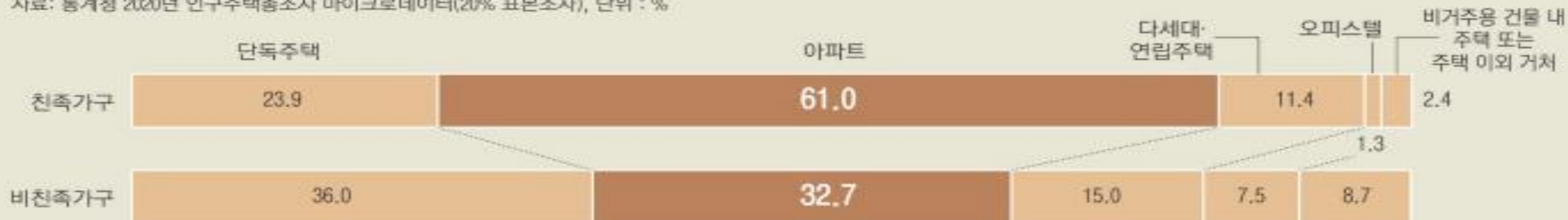
2. 비친족가구원 연령대별 비중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단위: %



7. 비친족가구 거처종류 비교

자료: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 표본조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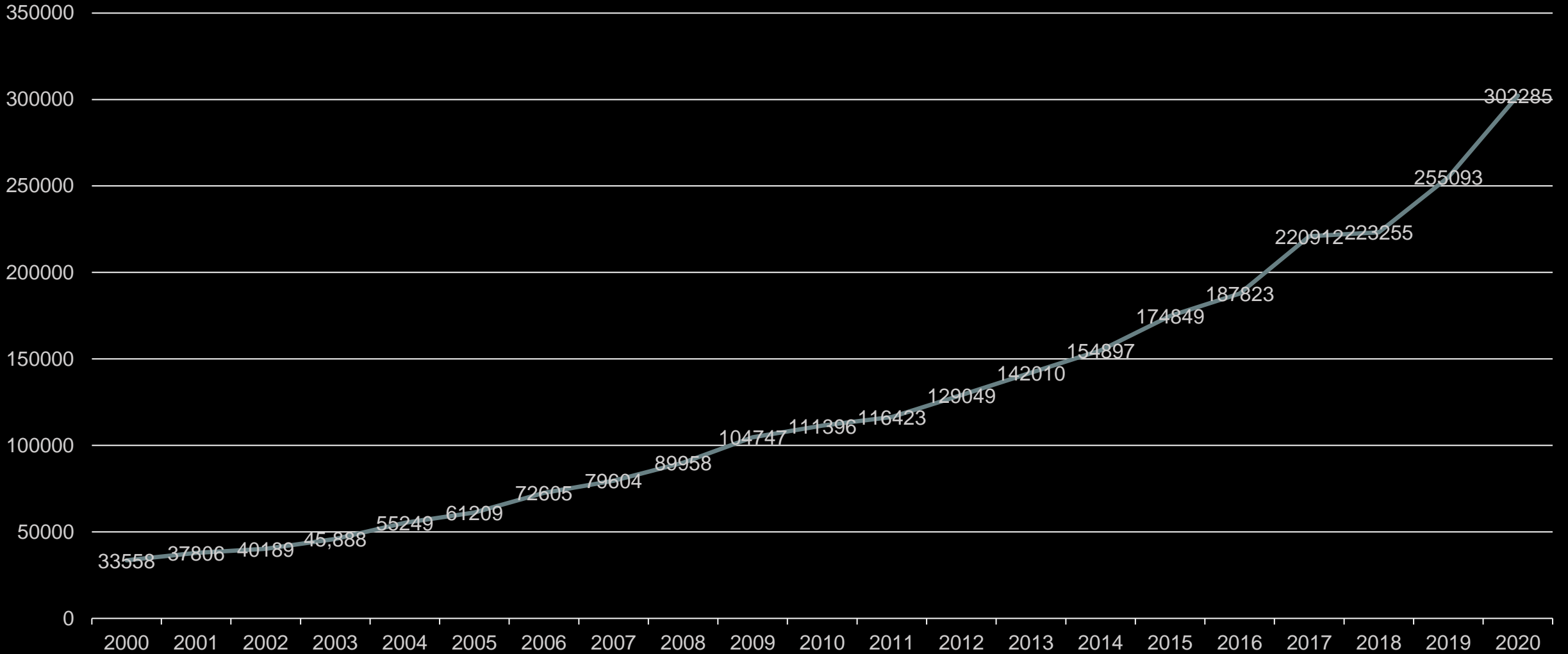
6. 비친족가구 거주형태(자가거주·월세·무상) 비율

자료: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 표본조사), 단위: %



고독의 사회적 비용

사회복지지출 규모(OECD기준 추계, 단위: 10억원)



고독의 사회적 비용

【2020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단위 : 원)

2020년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A)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65,005원을 추가함 (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2,481,920원)

3. 생활동반자법의 논점들

성적인 사이만 같이 살 수 있나요?



성적인 사이만 같이 살 수 있나요?

- 노동력 재생산에 기여하는 ‘이성애자의 성애적 관계’에만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
- 정서적 충만, 경제적 안정, 활동보조 등이 이성애적 사랑에 비해 작은 이유라고 볼 수 있는가?
- 같이 살고 싶은 이유를 국가가 꼭 알아야 해?: 서로 신뢰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만 보자

혼인신고의 장벽과 그 바깥의 사람들

'동거'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전체 Q&A 오픈백과 | 답변을 기다리는 질문

전체 지식iN (1-10/276,074)

FAQ 혼인신고 없이 생활비 부분

혼인신고 없이 아이만 낳아 아이는 제가 기르기로 했습니다.

단 아이를 가진 10개월동안은 생활비 50만원 출산용품 산후 조리원 병원비를 절반 매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태어난 후 따로 지급 한다고 하였고 이 부분을 믿지 못하겠어서 공증을 써 놓으려고 하는데 후에 이행되지 않을경우 공증효력이 있을까요? 채무관계 아닌 상태라 걱정이 됩니다

관련태그: 이혼

관련키워드: 채무, 양육비

Q 혼인신고 없이 동거만 약 4년동안 했다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나요?

삼촌이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못하시고 여자친구분과 동거만 4년 정도 하셨는데 저희 일가족들은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도 장례식장에 그 분이 나타나셔야 알게되었습니다. 정말 상견례는 둘째치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깨름칙한데 그 와중에 그 여자친구분이 본인과 삼촌은 사실혼관계에 해당하여 거의 부부나 다름없다고 하며 유족급여를 신청했다고 하는 겁니다. 가족들 중 그분의 얼굴조차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인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혹시나 사실혼이라는 것이 인정되어 유족급여 승인이 나게 될까봐 저희 가족들 다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승인이 나게 될까요? 어디 물어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난처한 상황에 지식인에 질문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가족, 이혼 | #사실혼 #혼인신고 #유족급여

혼인신고의 장벽과 그 바깥의 사람들

80대 남편 5년 간병했는데 상속재산 1%만 받게된 이유

[중앙일보] 입력 2020.01.01 09:00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법한 이야기(7)

A씨(1918년생, 남자)는 1940년경 첫 번째 부인과 결혼하고 그 사이에 9명의 자녀를 두었다. A씨는 1971년 초 B씨(1944년생, 여자)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서 다시 2명의 자녀를 두었다. A씨는 첫번째 부인이 1984년경 사망하자, B씨와 1987년경 혼인신고를 하고, 2008년경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았다.

A씨는 2003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5년이 넘도록 여러 병으로 고생하였고 10번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07년 이후로는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당시 60대이던 B씨는 80대 후반이던 A씨를 계속 옆에서 간호하였다. 그런데 A씨를 간병하던 중 B씨도 2008년 1월경 암에 걸려 투병하다가 2014년 사망하였다.

하나은행, 친구간병인에게 상속할 수 있는 '인생동반자신탁' 출시

기사입력 2019.10.16 10:16 최종수정 2019.10.16 10:16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KEB하나은행은 최근 사회구조와 가정환경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고민 해결을 위해 '인생동반자신탁'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생동반자신탁은 법정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생전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사후 재산을 전할 수 있는 신탁이다. 초고령화, 이혼 등 가동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후 법정상속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속 문제를 고객 필요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3.2.27. 국회 본회의 통과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u>일정</u>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 ----- ----- -----<u>조례로 정하는 바</u> <u>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u>----- ----- ----- -----.</p>
<p><신 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u>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u></p>

특별한 한 사람을 가질 헌법적 권리

○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내 운명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권리

○ 헌법재판소. '개인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자기결정, 혼인의 자유와 혼인에 있어서 상대방을 결정할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89헌마92 등)

○ 혼인의 자유를 넘어 '특별한 한 사람 가질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

특별한 한 사람을 가질 헌법적 권리

-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법적 인정이 우선
 - 동성동본 혼인금지
 - 미국의 타 인종간 혼인금지
 - 동성 결혼 등

특별한 한 사람을 가질 헌법적 권리

○ 차별금지, 사회복지혜택 부여 등을 위해 명확한 ‘법적개념’ ‘범주’가 필요

○ 다양한 가족의 정규직화

- 혼인 밖의 가족들이 불안정한 가족형태를 전전하지 않도록 해, 장기적인 삶의 계획을 세우도록 함.

생활동반자법은 ‘보수적인 법’

- ‘함께 사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한국 사회
 - 가족 구성의 장벽을 낮추는 가족법의 재건축이 필요

- 가족을 이루도록 장려하는 법
 - 책임, 정착, 돌봄, 안정을 강조하는 법
 - 가족제도를 떠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법
 - 사회복지와 법적 권리에 더 많은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법

생활동반자법은 동성애자를 위한 법이다?

- 생활동반자법은 성 정체성, 성별, 성관계 여부와 무관한 법
 - 동성애 관계를 배제한 입법은 불가능해
- 혼인은 상속권, 친권, 양육권, 국적 및 영주권 등 개인적, 법적으로 훨씬 다양하고 무거운 권리를 보장하는 법.
 - 동성혼은 별개의 논쟁으로 풀어가야.
- 동성애 혐오로 인권 법안들이 줄줄이 가로막혀. 동성애 혐오는 동성애자 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권리 보장을 막고 있음.
- 생활동반자법은 ‘행복해지고 싶은 보편적 마음’에 대한 법

4. 생활동반자법 입법 논의 상황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21.4.27.)

- 함께 생활하고 돌보는 공동체를 위한 제도 활용 지원(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 대안적 가족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유언·신탁제도 등 발굴·홍보(여성가족부, 법무부)
 - 재산 등 권리관계 명시, 분쟁해결 방안 등 안내를 위한 매뉴얼 제작·보급
 - 자율적인 재산약정 계약서, 유언장 작성, 유언대용신탁* 등 활용에 대한 상담·교육 및 홍보 추진
 -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신탁 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의 사망 후 재산을 수익하게 할 수 있는 제도(신탁법 제59조)
 - 대안적 가족 공동체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들의 유언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법상 유언제도의 개선 필요성 검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21.4.27.)

- 서로 돌보는 대안적 가족관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검토 및 논의 추진(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 법률혼·혈연 이외의 서로 돌보는 대안적 가족에 대해 가족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권리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서로 돌보는 대안적 가족관계의 정의 및 권리보호의 내용, 당사자 간 관계 성립과 해소, 인적·재산적 효력, 관계 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 등 규정
 - 가족돌봄지원 제도, 피부양자·유족범위 등에서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과 돌봄을 하는 가족 관계를 포괄하도록 중장기적 제도 개선 검토 및 논의
 - 현행 유족급여·보상 등 관련 각종 개별 법률(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피부양자·유족 범위를 '사실혼' 관계까지 보호하며, 공공 주거 지원 관련 법령 및 정책(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상의 각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에서 '법률혼' 중심으로 규정

민주당의 입장

- 이재명 대표 (22.9.28.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사회변화를 고려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프랑스에서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이는데 기여한 생활동반자제 도입도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각자도생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해결의 단초도 열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의 입장

- 박홍근 원내대표 (23.2.13.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가족규정은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 제도를 도입해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입니다.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에 맞춘 '연대관계등록제'라도 우선 도입해서, 돌봄·의료 등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입장

- 대표발의 없음
- 공동발의 명단: 이수진(비), 강민정, 김두관, 유정주, 김한규, 권인숙, 김홍걸, 이상민, 최상욱
- 상임위 의견제시: 박범계, 박용진 등

“동성혼 합법화 길 터주는 생활동반자법 철회하라”

교계·시민단체 1200여곳 국회 회견

차별금지법안에 이어 이른바 ‘생활동반자법’의 입법화 추진에 교계와 시민단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된 이 법안이 사실상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터주는 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교계는 법제화 철회를 요구하는 등 입법 반대 활동에 본격 나서는 분위기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등 1200여개 교계·시민단체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동관에서 ‘생활동반자법 철회 요구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생활동반자법은) 혼인과 가족 구성이 남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보는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정면 배치되며 혼인을 급감과 사생아 급증을 초래하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생활동반자법은 지난달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0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박종호(왼쪽 다섯 번째) 사무총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동관에서 기독교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생활동반자법 철회요구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공동체 법적 보호 골자 동성애자에게도 혼인 준하는 권리 “유사한 프랑스 시민연대협약실패 혼인을 급감·사생아 급증 불보듯”

이다. 혼인이나 혈연관계 여부에 상관없이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에 법적인 보호를 부여하는 내용이 법안 골자다. 생활동반자를 기존 가족관계처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호하기

위해 민법을 비롯해 법 25개를 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생활을 함께하는 동반자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사실상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이란 시각도 있다.

수기총 등은 이와 관련, “이 법안이 규정하는 ‘생활동반자 관계’란 남녀 상관 없이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과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말한다”면

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 동성애 관계에도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안을 발의한 용 의원 등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로 프랑스의 혼인에 준하는 법적 보호제도인 ‘팍스’(PACs·시민연대협약) 사례를 들고 있다. 1999년 팍스 도입으로 출산율이 증가하고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안락과 가족을 구성할 개인의 자유 등이 보장받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수기총 등 기독교시민단체의 관

점은 다르다. 팍스가 실제로는 혼인율을 감소시키고, 혼인 외 출산율은 오히려 급증하는 등 실패한 사례라고 본 것이다. 기독교시민단체들은 “팍스는 법적 권리는 혼인과 유사하면서 계약 및 계약의 해지에 드는 비용은 혼인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이성 커플 사이에서 대중적인 제도로 자리 잡은 것”이라며 “그결과 프랑스의 혼인은 2019년 22만5000건으로 20년 전보다 23% 줄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팍스 도입 전인 1999년 42.7%였던 혼인 외 출산율이 2021년 63.5%로 급증하는 등 사생아가 급증하는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기독교시민단체들은 또 생활동반자법 인 발의자 11명 중 9명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건의 포괄적차별금지법(차금법) 또는 평등법을 동시 발의했다고 지적하면서 “생활동반자법은 차금법을 통과시키려는 꼼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글·사진=임보혁기자 bossem@kmib.co.kr

탈가족 시대 정책 어떻게... '물보다 피' 옛말, 혈연 중심 제도 바꿔야 1인 가구에 주택청약·소득공제 지원을

머니투데이

광화문

김기진 기자 | 입력 : 2020.09

2023년 08월 08일 (화) 09면

저출산에 헛돈 쓰지 마라

양영진
사회부장



김규진·김세연씨 부부는 다둥담 출산할 예정이다. 그들은 미국 뉴욕에서 혼인신고와 별거에서 인공수정 시술을 받았다. 한국인 부부가 먼 외국에서 이런 절차를 밟은 것은 이들이 레즈비언 커플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동성간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활발하게 언론 앞에 나서면서 당찬 모습을 보이지만 이 땅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는 그렇게 자신이 없다. 태어난 아이가 친구들에게 '아빠가 없다'며 괴롭힘을 당하면 이민 가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출산을 앞둔 규진씨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말했다.

전통적인 가정은 남녀의 혼인, 그리고 혈연관계로 이뤄진다. 우리 사회에선 '전통적'인 것은 곧 '정상적'이다. '전통적'인 가정의 구성원이 아닌 아이가 우리 사회에서 '비정상적'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게 김씨 부부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가정이 언제까지나 '일반적'인 가정이라는 법은 없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을 뜻하는 혼인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통계

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19만 1690건으로 10년 전인 2012년 32만 7073건에서 41% 감소했다. 2020년 기준으로 25~49세 인구 중 혼인경험이 있는 남성은 52.9%, 여성은 67.1%다. 10년 사이 남성은 11.8%포인트, 여성은 10.3%포인트 하락했다. 1인가구가 특히 많이 늘고 있고 동거(동성 또는 이성간) 가구도 적지 않다.

"혼인감소가 저출생의 이유다"라고 혼하를 말하지만 절반만 맞는 말이다. 출생은 혼인신고와 한 남녀 부부에게서 이뤄진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레즈비언 김씨 부부의 출산은 우리 사회에서 출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저출생 대책의 한계를 설정해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13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50%에 머물렀다.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우리 사회구성원 절반에게 과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늘려 주고, 육아수당을 더 주고, 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을 한다고 해서 그들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될까.

저출생 대책은 '혼인'과 출생을 별개로 생각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전통적인 혼인부부의 출산이 출생의 거의 전부인 한국은 독특한 나라다. 한국은 혼외출생률이 2020년 기준 2.5%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41.9%에 달한다. 아이들의 거의 절반이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태어난다는 얘기다. 칠레와 멕시코, 코스타리카는 '혼외출생률'이 70%를 넘고 아이슬란드와 프랑스는 60%다. 평균보다가 세운 보수적인 나라 미국도 40.5%로 평균에 가깝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 통계다. 한국의 혼외출생률이 OECD 평균 정도만 된다면 합계출산율은 1.55명으로 현재(2022년 기준 0.78명)의 2배가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김영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최근 발표되기도 했다. 전통적인 혼인관계에서 이뤄지는 출생만 정상적으로 취급하는 문화가 결국 아이 없는 세상을 만들었다. 전국을 경악하게 한 미등록 영아살해·유기 역시 혼외출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열악한 사회지원이 무시할 수 없는 배경이 됐을 것이다.

동성혼을 하루빨리 허용하라는 뜻이 아니고, 혼외출생을 장려하라는 말도 아니다. 모든 출생을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말이다. 가치관은 바뀌는데 표준만 과거에 붙잡아둘 수는 없다. 태어난에 대해서까지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오래된 잣대가 한국을 소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 그동안 천문학적인 저출산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오히려 출산율은 급전직하했다는 데서 깨달아야 한다. 오래된 잣대를 뜯어고치지 않고 쏟는 돈은 모두 헛돈이라는 것을.

indepent 234 X 164 mm

시대착오적인 '건강가정기본법' 고수



기자24시

이진한

오피니언부 mystic2j@mk.co.kr

"무연고자 장례를 주관하다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대하는 한국 사회의 의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3월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 장례식을 취재하면서 만난 한 장례지도사의 말이다. 그는 사망 후 법적 가족으로부터 시신 인수를 거부당하고 무연고자로 세상을 떠난 사회 소외 계층들의 사연과 더불어 사실혼·동거 가족은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례를 주관하기 어려워 '억울한' 무연고 사망자가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2020년 사망자가 생전에 자신의 장례 주관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리 지침이 생겼지만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취재 경험 때문에 그해 11월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길 바랐다. 개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조항

을 삭제하며 가족의 정의를 넓혔고, 장애인·이혼 가정 등에 대한 차별 인식을 확대한다는 비판이 있던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런데 최근 여성가족부가 앞선 입장을 번복하며 해당 법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건강가정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내고, 가족의 정의는 국가의 보호·지원 대상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였다. 일각에서 보수 여당과 종교계의 눈치를 본 행태라고 비판하자 여가부는 "개정안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가부의 행태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인식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다. 1인 가구가 40%를 넘고 가족이 아닌 친구·연인끼리 거주하는 비(非) 친족 가구원이 100만명 이상인 시대다. 여가부의 2019년 조사에서 이미 응답자 중 66.3%가 '혼인·혈연 관계에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가족으로 인정한다'고 답했다. 더 이상 전근대적인 가족상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 여가부의 해명대로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기 위해서라도 전향적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혼란 : ' 동성혼 ' 프레임으로 한정해 해석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경향신문 “한동훈 장관은 피할 수 없는 일을 피하려 하네요”
주디스 버틀러 인터뷰 기사 관련, 한동훈 법무부장관 설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현재 추진 중인 ‘생활동반자법’은 ‘동성혼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성혼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가족제도에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동성혼 배우자를 법률상 부부관계로 인정함에 따른 다양한 권리 의무를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충분한 논의와 그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저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저는 법의 실질은 동성혼 제도 법제화이면서 아닌척 다수의석으로 슬쩍 법 통과시키지 말고, 국민 설득할 자신있으면 정면으로 제대로 논의하자는 말씀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도 동성혼 제도 법제화를 찬성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조차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향신문이 주디스 버틀러 교수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3.8.15. 법무부 SNS)

5. 생활동반자법안

생활동반자를 맺을 때

- **생활동반자를 맺을 수 있는 사람**

- 합의한 성인 두 명이 등록(청소년은 불가)
- 영주자격 외국인도 맺을 수 있어
- 혼인 중인 사람, 다른 사람과 생활동반자를 맺은 사람은 불가

- **생활동반자 등록**

- 대법원이 관할, 가정법원이 위임받아 관리
- 별도의 계약이 없으면, <생활동반자법>에 따른 조항에 따라 재산 관리

- **차별금지**

- 차별금지법 입법 시 차별금지 조항 반영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법>, <아동복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필요

생활동반자가 함께 살 때 (1)

• 주거권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세대 조항 개정
-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에 생활동반자도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개정

• 피부양자 인정의 문제

- 소득세 인적공제 인정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인정

생활동반자가 함께 살 때 (2)

- **도와줄 권리**

- 돌봄휴직 인정
- 친권 여부와 무관하게 생활동반자의 출산 시, 출산휴가 지원. 육아 지원을 위한 육아 휴직 보장
- 노인 요양보호를 사용하지 않고, 가정요양보호 시 지원금 지급

- **대신 결정할 권리**

- 수술 등 의료결정권 관련, 건강할 때 생활동반자를 포함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가능
- 의료정보 등 관련 서류 발급 위임권 부여
- 연명치료 결정시 거부권 보장
- 인신구제 요청권 보장

생활동반자가 헤어질 때

- **해소의 사유**

- 둘의 합의
- 일방적 해소(상대에게 통보했다는 증빙 필요)
- 일방의 혼인, 둘의 혼인
- 일방의 사망

- **재산 분할 및 손해배상**

- 공동형성재산에 대한 분할 권리 (가사노동, 돌봄노동 가치 포함)
- 동거 및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생활비, 방임 등)

-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형사절차 이전에도 접근 금지 및 퇴거, 가정폭력피해자 쉼터 입소 및 자활 지원 등
- <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방지법> 개정 필요

생활동반자가 사망할 때

- 장례를 치를 권리

- 친족, 생활동반자를 포함해 시신을 인수할 사람(또는 순위)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

- 상속과 유언

- 유류분 등 법적 상속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생전에 유언장 작성을 통해 상속문제 명확히 해야
- 일정기간 이상 생활동반자 관계 유지시 증여세 일부 면제 필요
- 주택임대차의 우선 승계권 보장
- 유족급여의 부모, 자녀 다음 순위 보장
- 사보험, 퇴직금 등에서 차별 없게 가이드라인 마련

용혜인 안의 특징

19조(생활동반자관계 해소와 자의 양육책임) ① 생활동반자관계에서 함께 양육하여야 할 자(子)가 있는 경우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안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중 “부부”를 “부부거나 3년 이상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하는”을 “하거나 1년 이상 생활동반자관계 있는 사람의 한쪽이 다른 한쪽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으로 한다. ... (이하 생략)

생활동반자법은 한국 민주주의의 다음 단계

- 제도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감정적 가치를 보여 줌.
- “(국가는) 인간에 대한 동등한 존중, 표현·결사·양심의 자유,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권리 부여 등을 포함하는 (중략) 소중한 감정유형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정한 세금 제도는 시민에게 적법한 균형과 공평한 동정심이라는 통찰을 보여주는 것 ” (마사 누스바움, 『정치적 감정』)

생활동반자법은 한국 민주주의의 다음 단계

- 국민 개인의 삶조차 국가발전의 도구로 삼아 온 대한민국
 - 국가의 기준에 벗어나는 삶은 쉽게 평가받고 모욕당한다.

- 각기 다른 권리와 다양성을 정치적 과제로
 - 각자가 맥락에 맞게 선택한 행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